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경훈 의원 외 24인
나. 의안번호: 제2158호
다. 발의일자: 2024.10.15.
라. 회부일자: 2024.10.18.

2. 제 안 사 유

-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수소 충전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

3. 주 요 내 용

-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7조의2).
나.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등의 신설(안 제7조의7).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무 민간 위탁 규정 정비(안 제11조).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수소 충전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 항 | 내 용 |
|---------|--|
| 안 제7조의2 |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규정 신설 |
| 안 제7조의7 | ·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기준/규정의 수립·배포, 교육 시행, 인증·홍보 등 |
| 안 제11조 | ·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위탁 수준 강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운영, 안전 관리 및 인증, 홍보·교육 등) |

나. 검토의견

- 안 제7조의2는 시장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운영과 자금·기술 지원 및 기준 정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시설의 안전 관리와 지원을 위한 개정 취지에 이견은 없음.

다만, 시설 지원 규정은 현행 조례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바,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설 설치 기준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¹⁾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7조의7은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사업의 시행과 인증·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전시설 안전 관리의 경우 상위법령²⁾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인증·홍보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0조(홍보 및 교육)³⁾에 유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규정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안 제1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임.

현행 조례는 업무 위탁 기관의 범위를 서울에너지공사를 포함한 전문기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향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무 확대 가능성,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3)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